

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

수신 받는곳 참조

(경유)

제목 서울시 및 강남구와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간 협약건

1. 2014. 12. 24.자 서울시와 강남구 및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간 체결된 「강남자원회수시설로의 생활쓰레기 전량반입에 대한 협약서」와 관련입니다.

2. 위 협약서에 대하여 강남주민지원협의체는(강남주민협의체-63, 2016.12.30) 강남구가 협약 내용을 위반하여 협약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공문을 시행하였고, 강남구는(청소행정과-42535, 2016.12.30.) 이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서울시가 2015. 7. 1.자 자치구에 통보한 「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」에 따라 반입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는 본 협약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효하다고 보는 바,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기존 협약이 유효하다고 보는 이유

- 협약서 제7조 본문 “본 협약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존속하는 한 유효하다.”
협약서 제8조 본문 “본 협약은 강남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그 효력을 유지하며~~~”로 명시되어 있고,
- 위와 같이 본 협약이 어느 일방의 의사로 파기 할 수 없도록 한 점은 약정을 3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자율적 의사로 불확정기한으로 협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(만약 서울시나 강남주민지원협의체가 강남구의 생활쓰레기를 반입 할 수 없다고 하면 강남구는 협약서 제7조를 주장할 것이 명백하고, 또 반대로 본 협약이 없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강남구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여 지는 바),
- 또한 현재 강남구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점, 3자간 협약을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만 해지 통보한 것은 그대로 효력을 발한다고 보기 어려움. 끝.

과 장	강남구		결재 (공람)	청소행정과	정장		
접수시	2017.6.9.	번호		15894	지역청	결장	
처리과	청소행정과	담당		김삼경	자원재활용	용장	
					시설장	비장	



강남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



받는 곳 서울특별시(자원순환과), 강남구청(청소행정과)

사무국장 *김영선* 부위원장 *김상동* 위원장 *장효순*

협조자

시행 강남주민협의체-09-9/ (2017.06.09.) 접수 ()
우 06340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/
전화 02-3411-7237 /전송 02-3411-7239 / starland88@naver.com / 공개() 비공개()

